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테러이용수단 대책 수립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10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2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08호)	12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13호)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문대림 · 김교홍 · 허 영 · 주철현
이원택 · 송옥주 · 민병덕 · 서영석 · 강준현 · 김우영
박희승 · 백선희 · 정동영 · 김태선 · 허성무 의원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페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 조사·분석 사업을 포함시키고, 관계기관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에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테러이용수단의 제작·유통·사용 행위 차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테러이용수단”이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을 말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② (생략)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u>

현행	개정안
4. (생략) ④ (생략)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u>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u>,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u><신설></u>	<u>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 ----- ----- ----- ----- --<u>테러이용수단</u> 및----- ----- -----. ② 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테러이용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유통·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u>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u>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u> 2. <u>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충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u> 3. <u>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 ----- ----- ----<u>테러이용수단</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최근 외국에서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이를 이용한 범죄·테러 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아직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테러 사건이 발생

한 바 없으나,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고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총기류 관련 사고 현황>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건수	9	10	18	15	15	16	8	10	9	8	11

자료: 경찰청

주: 총기류를 이용한 테러 시도는 없었으며, 사냥, 우발적 발포, 자살 등 기타 사안으로 발생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5조제3항제4호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아래와 같이 법체계상 정합성 및 집행상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②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③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등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¹⁾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새로운 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이어서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국무조정실은 해당 사항은 현행법상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 또는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될 경우 테러 관련 다른 모든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인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또한,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는 것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신종 테러이용 가능 수단을 수시로 조사·분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³⁾

아울러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의 비상설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행정청에 신청한 사업 인허가를 심의·의결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⁴⁾

둘째,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테러이용수단의 제작·유통·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체계 적합성 및 중복 규제 입법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5. 7.

3) 국가정보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5. 7.

4) 경찰청,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회신」, 2025. 7.

국가정보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현행법 제10조⁵⁾는 관계기관의 장⁶⁾으로 하여금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테러이용수단 및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테러이용수단의 일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경우 다른 안전관리대책 사항과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

또한,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제 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⁷⁾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 규제가 가능하고,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제1호)의 경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⁸⁾에 따라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 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록 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 사업자 목록을 보유하고 있음.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제2호)의 경우에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⁹⁾에 따라 사업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교육에는 모의총포 제작 금지 의무 소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¹⁰⁾ 등에 따라 관계기관이 신종 테러이용 가능 수단을 수시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립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생략)

②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처리방법 및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로 조사·분석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현행법 제10조¹¹⁾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¹²⁾에 따라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경찰청·원자력안전위 등 각 부처에서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점검·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는 입장임.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국가정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의 도난·분실·불법유통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③ ~ ⑤ (생략)

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 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① (생략)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 그리고 법체계 적합성 및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고, 특히 현행 법령체계가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방지 추진체계, 일반적 대책 수립 및 권한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삼차원프린팅 활용 테러이용수단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또는 총기류 안전관리 관련 개별법 규정에 근거한 정책 수립·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 제10조제2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08호)」,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13호)」이 발의되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 6788-5616

※ 참고자료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08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준수의무) (생략) <u><신설></u>	제16조(준수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국 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 러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 러센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한 모의 총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모의총포를 말한다)의 제작·소지·유통 의 위험성에 대하여 삼차원프

	<u>린팅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u> <u>하는 교육·홍보</u> <u>3. 삼차원프린팅 사용 관련 정</u> <u>보의 수집·유통</u>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u>제16조를</u>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 (생략)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제21조(시정명령)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6조제1항을</u>----- ----- -----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6조를</u>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 우 3.·4. (생 략) ② (생 략)	2. <u>제16조제1항을</u>----- ----- -----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13호)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u>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